[별지 제7호서식]<개정 2000.7.29>

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※ □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,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					처리기간 1일
신고인	①중개업자 종 별	□법인 □공인중개사 □중개인			
	②성 명 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		
	④주소/거소	(전화 :)			
사무소	⑤명 칭		⑥등록번호		
	⑦소 재 지	(전화 :)			
	⑧변경후명칭		⑨변경후소재지	(전화 :)	

소속 중개업자 ※합동사무소인 경우에 한함	⑩ 중개업자 종별	⑪ 등록번호	⑫ 사무소 명 칭	⑬ 성명	⑭ 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	⑮ 주소/거소	<16> 자격증번호 (공인중개사)

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·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 비 서 류	1. 등록증(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) 2.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

※ 신 고 안 내

신고하는 곳	시·군·구	담 당 부 서 (전화번호)	부동산중개담당부서 ( )
		수 수 료	없음
유 의 사 항	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(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).		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